

光州廣域市西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1996 年 2 月

企劃總務委員會

1. 審 查 經 過

가. 提出日字 : 1996年 2月 13日 光州廣域市 西區廳長 提出
및提出者

나. 回附日字 : 1996年 2月 14日

다. 上程日字 : 第54回 西區議會(臨時會) 會期中

第3次 企劃總務委員會(1996年 2月29日 上程議決)

2. 提案說明의 要旨

(提案說明者 : 總務課長 尹大宇)

가. 提 案 事 由

- 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14825호)되어 시행됨에 따라
-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담당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제도로 개선하는 한편
-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 하려는 것임

나. 主要 骨 子

- 구청장은비상사태 발생시 또는 대비훈련시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하도록 함 (안 제7 조 제2항)
-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 연장 (안 제18조)
- 공무원 건강진단 외국어 능력시험 응시시 공가 허가 (안 제22조)
- 주요업무성공수행공무원 6일이내의 특별휴가허가 (안 제23조 제5항 제5호)
- 20년이상 근속공무원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 허가 (안 제23조 제6항)

3.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 朴鍾根)

- 본 조례안은 자치시대 지방공무원의 복무조례중 미비점을 보완 하기 위한 것으로서
- 규정을 준수하면서 주요업무를 창의적이고 성공적으로 노력한 자 등에 대한 연가, 공가, 특별휴가, 장기근속휴가제도를 개선하였으며
- 비상사태 발생시 또는 대비훈련시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4. 質疑 및 答辯 要旨 : 생 략

5. 討 論 要 旨 : 생 략

6. 審 査 結 果 : 수정안 가결

7. 少數意見要旨 : 없 음

8. 其 他 事 項 : 없 음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1996. 2. .

발의자 장헌일 의원외 8인

1. 수정사유

- 공무원 복무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14,825)되어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활기찬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이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수정하여 복무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제23조 제5항 제5호중 "주요업무"를 "담당업무"로 한다.
- 제23조 제7항을 삭제한다.

3. 기타 참고사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3조 제5항 제5호중 "주요업무"를 "담당업무"로 한다.

안 제23조 제7항을 삭제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 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u>휴가</u> 를 얻을 수 있다.	제23조(특별휴가) ① ----- ----- ----- <u>경조사휴가</u> -----.	제23조(특별휴가) ① ----- ----- -----
②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이내의 <u>휴가</u> 를 얻을 수 있다.	② ----- ----- <u>출산휴가</u> -----.	② ----- -----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마다 1일의 <u>생리</u> <u>휴가</u> 를 얻을 수 있다.	③ ----- <u>여성</u> <u>보건휴가</u> -----.	③ ----- -----.
④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 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u>휴가</u> 를 얻을 수 있다.	④ ----- ----- ----- <u>수업휴가</u> ----- -----.	④ ----- ----- ----- ----- -----.

현행	개정안	수정안
⑤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 이내의 <u>특별휴가</u>를 허가할 수 있다. 1. ~ 4. (생략) < 신 설 > < 신 설 > ⑥ 월 15일 이상 선박에 승선근무한 공무원은 7일 이내의 <u>휴가</u>를 얻을 수 있다.	⑤ ----- ----- <u>구청장</u> ----- ----- <u>포상휴가</u> -----. 1. ~ 4. (현행과 같음) 5. <u>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u> ⑥ <u>구청장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 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u> ⑦ ----- ----- <u>승선휴가</u> -----.	⑤ ----- ----- -----. 1. ~ 4. (개정안과 같음) 5. <u>담당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u> ⑥ ----- ----- ----- -----. (삭제)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하고, 동조제1항중 “당직근무자(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로 하며, 동조제2항중 “당직근무자”를 “당직 및 비상근무자”로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구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 전단중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근무시간”을 “근무시간등”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의 단서중 “토요일에는”을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근무시간의 변경)”을 “(근무시간등의 변경)”으로 하고, 동조중 “근무시간”을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근 속 기 간	연 가 일 수
3월이상 6월미만	4 일
6월이상 1년미만	7 일
1년이상 2년미만	1 0 일
2년이상 3년미만	1 3 일
3년이상 4년미만	1 6 일
4년이상 5년미만	1 9 일
5년이상 6년미만	2 2 일
6년이상	2 3 일

②제1항의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인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의 제목 “(연가일수예의 산입)”을 “(연가일수에서의 공제)”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결근일수·휴직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제21조제1항중 “소속기관의 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2월”을 “60일”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6월”을 “180일”로 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

제22조중 “소속기관의 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3호중 “참가하려 할 때”를 각각 “참가할 때”로 하고, 동조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동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로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제23조제1항중 “휴가”를 “경조사휴가”로 하고, 동조제2항중 “휴가”를 “출산휴가”로 하며, 동조제3항중 “생리휴가”를 “여성보건휴가”로 하고, 동조제4항중 “휴가”를 “수업휴가”로 하며, 동조제5항중 “소속기관의 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특별휴가”를 “포상휴가”로 하며, 동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제23조제6항중 “휴가”를 “승선휴가”로 하여 이를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여 이를 제8항으로 한다.

⑥구청장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⑧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 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6조제1항중 “법 제56조의 규정”을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대통령령)”으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정치적 행위)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2.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등을 제작 또는 배부 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당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 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u>당직근무</u> 자(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u>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u> <u>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u> <u>치를 취하여야 한다.</u>		제7조(당직및 비상근무) ① - <u>당직근무자는</u> <u>모든 사고를 방지</u> -		
	<신 설>	②구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 는 <u>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u> <u>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u> <u>여야 한다.</u>		
② <u>당직근무자는</u>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u>당직근무에</u>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u>당직 및 비상근무자</u> - - - - - - - - - - <u>당직 및 비상근무</u> - - - - - -		
③ <u>당직근무에</u>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u>당직 및 비상근무</u> - - - - - - - - - -		
제10조(파견근무) ①~② (생략) ③ <u>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u> <u>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u> <u>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u>		제10조(파견근무) ①~②(현행과같음) ③ - - - - - - - - - - - - - - -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2장 근무시간

제13조(근무시간) ① (생략)

②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4조(근무시간의 변경) 구청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근속기간(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근속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3 일
6월이상 1년미만	7 일
1년이상 2년미만	8 일
2년이상 3년미만	11 일

-----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

제2장 근무시간등

제13조(근무시간) ① (현행과 같음)

② -----
----- 중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

제14조(근무시간등의 변경) -----

-----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 -----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근속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4 일
6월이상 1년미만	7 일
1년이상 2년미만	10 일
2년이상 3년미만	13 일

<table> <tr> <td>3년이상 4년미만</td><td>1 4 일</td></tr> <tr> <td>4년이상 5년미만</td><td>1 7 일</td></tr> <tr> <td>5년이상</td><td>2 0 일</td></tr> <tr> <td><신 설></td><td></td></tr> </table>	3년이상 4년미만	1 4 일	4년이상 5년미만	1 7 일	5년이상	2 0 일	<신 설>		<table> <tr> <td>3년이상 4년미만</td><td>1 6 일</td></tr> <tr> <td>4년이상 5년미만</td><td>1 9 일</td></tr> <tr> <td>5년이상 6년미만</td><td>2 2 일</td></tr> <tr> <td>6년이상</td><td>2 3 일</td></tr> </table>	3년이상 4년미만	1 6 일	4년이상 5년미만	1 9 일	5년이상 6년미만	2 2 일	6년이상	2 3 일
3년이상 4년미만	1 4 일																
4년이상 5년미만	1 7 일																
5년이상	2 0 일																
<신 설>																	
3년이상 4년미만	1 6 일																
4년이상 5년미만	1 9 일																
5년이상 6년미만	2 2 일																
6년이상	2 3 일																
②제1항의 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 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계속 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휴직 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 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 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 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 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④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액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으로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② ~ ③ (현행과같음) ④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수 있다.

제20조(연가일수에의 산입) ①결근일수
· 휴직일수 · 직위해제일수 및 정직일수
는 이를 연가일수에 산입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제21조(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에는 연 2월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1. ~ 2. (생략)

②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
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6월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

같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
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
일수 · 휴직일수 · 정직일수 및 직위해
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
한다.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병가) ① 구청장 - - - - -
- - - - -
- - - 60일 - - - - -
- - - - 이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
로 계산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180일 -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공가) 구청장 - - - - -
- - - - -
- - - - -

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
검사·소집·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
2. (생 략)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
하려 할 때
4. (생 략)

<신 설>

<신 설>

5.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
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휴가를 얻
을 수 있다.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생리휴가를 얻을 수 있다.

-----.

1. -----

----- 참가할 때

2. (현행과 같음)

3. ----- 참가
할 때

4. (현행과 같음)

5.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
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
강진단을 할 때

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
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
에 응시할 때

7. -----

제23조(특별휴가) ① -----

- ----- 경조사휴가 -----
-----.

- ② -----
----- 출산휴가 -----
-----.

- ③ -----
여성보건휴가 -----.

④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
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
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
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
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
여 6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 4. (생략)

<신설>

<신설>

⑥월 15일이상 선박에 승선근무한 공무
원은 7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법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이나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
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 - - - - -
- - - - -
- - - - -
- - - - -
- 수업휴가 - - - - -.

⑤ - - - - -
- - - - - 구청장 - - - - -
- - - - - 포상휴가 - -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⑥구청장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
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⑦ - - - - -
- - - - - 승선휴가 - - - - -.

⑧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
과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
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
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
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
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6조(검직허가) ①공무원이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생략)

제2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검직허가) ① - - - - - 지방
공무원의영리업무의 한계에관한규정
(대통령령)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정치적 행위) ①법 제 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2.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
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
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
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

부 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
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
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
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
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
서·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
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
용되는 기·완장·복식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
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
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
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